

## 「청탁금지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협조사항

### □ 추진 배경

- 「청탁금지법시행령」 개정(23.8.29. 국무회의 의결)에 따라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의 선물 수수 상한액이 상향될 예정임
  - 또한, 국민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(금액상품권은 제외)에 한해 선물이 허용될 예정
- 한편, 현행 공직자 행동강령 상 ‘금품등 수수 금지’ 관련 규정을 청탁금지법 상 세부 행위기준에 맞춰 통일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
  - 그러나, 기관별 행동강령은 훈령, 조례·규칙, 사규 등으로 제정형식이 상이하고, 개정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- 기관별 행동강령이 개정되기 전이지만,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실효성을 위해 각급 공공기관이 행동강령을 적극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사항을 마련하여 조치할 필요

### □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

- (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 가액 상향)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,
  - 각급 기관별 행동강령의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가액 변경(10만원→15만원, 설날·추석 20만원→설날·추석 30만원)

- (선물 범위 확대) 선물 구입·전달이 간편한 ‘온라인·모바일 선물시장’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, 스포츠·문화관람권 등을 통해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
  - 각급 기관별 행동강령의 선물범위를 ‘물품 및 용역상품권’(금액상품권은 제외)에 한해 허용하여 운영하도록 변경

### □ 각급 공공기관 행동강령 운영협조사항

- 각급 공공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에서 ‘금품등의 수수 금지’ 관련 가액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, 「청탁금지법시행령」 개정사항을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을 조속히 반영
  -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부령이나 훈령, 지방자치단체는 규칙, 지방의회는 조례, 공직유관단체는 사규 등으로 제정되어 그 제정형식이 상이하며, 개정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- 다만, 각급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의 조속한 개정이 어려운 공공기관의 경우,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전이라도 청탁금지법 시행령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
  - 기관별 행동강령을 개정하지 않은 가운데 청탁금지법시행령의 개정사항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여, 소속 공직자가 현행 자체 행동강령에 반하더라도 행동강령 미위반으로 봄
  - ※ (예시) 청탁금지법시행령 시행 이후, 기관별 행동강령의 농수산물·가공품의 현행 가액기준인 10만원, 설·추석 2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가액 기준이하인 경우에는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
  - ※ (예시) 현행 기관별 행동강령이 유가증권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5만원 이내 ‘물품 및 용역상품권’을 수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

**참고1**

**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(신·구 조문대비표)**

현 행	개 정 안
<p>[별표1] <u>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의 가액 범위(제17조제1항 관련)</u></p> <p>1. <u>음식물(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, 다과, 주류, 음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): 3만원</u></p> <p>2. <u>경조사비: 축의금·조의금은 5만원. 다만, 축의금·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·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.</u></p> <p>3. <u>선물: 금전, 유가증권,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</u>한 일체의 <u>물품</u>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. 다만,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(이하 “농수산물”이라 한다)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(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, 이하 “농수산가공품”이라 한다)은 <b>10만원</b>(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<b>20만원</b>)으로 한다.</p>	<p>[별표1] <u>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의 가액 범위(제17조제1항 관련)</u></p> <p>1. <u>음식물(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, 다과, 주류, 음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): 3만원</u></p> <p>2. <u>경조사비: 축의금·조의금은 5만원. 다만, 축의금·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·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.</u></p> <p>3. 선물: <u>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</u>한 일체의 <u>물품 및 상품권(물품상품권 및 용역 상품권만 해당하며, 이하 “상품권”이라 한다)</u>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. 다만,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(이하 “농수산물”이라 한다)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(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, 이하 “농수산가공품”이라 한다)과 <b>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</b>(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<b>30만원</b>)으로 한다.</p> <p><b>가. 금전</b></p> <p><b>나. 유가증권(상품권은 제외한다)</b></p> <p><b>다. 제1호의 음식물</b></p> <p><b>라. 제2호의 경조사비</b></p>
<p>비고</p> <p>가. 제1호, 제2호 본문·단서 및 제3호 본문·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나. 제2호 본문의 축의금·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·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,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</p>	<p>비고</p> <p>가. 제1호, 제2호 본문·단서 및 제3호 본문·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나. 제2호 본문의 축의금·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·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,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</p>

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.

**<신 설>**

- 다.**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**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**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가액 범위는 **10만원**(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**20만원**)으로 하되,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.
- 라.** 제1호의 음식물,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,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.

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.

- 다.** 제3호의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)하여 발행·판매하고,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(이하 “발행자등”이라 한다)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, 백화점상품권·온누리상품권·지역사랑상품권·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.
- 라.**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**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 상품권**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가액 범위는 **15만원**(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**30만원**)으로 하되,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.
- 마.** 제1호의 음식물,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,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.